

서울특별시 마포구 방범용 CCTV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대표발의 : 강희향 의원)

의안 번호	16-99
----------	-------

발의년월일 : 2016. 10. 19.

발의자 : 강희향·문정애·백남환

신종갑·유호렬·이동주

이봉수·이학래·허정행(9명)

1. 제정이유

관내 범죄예방과 주민생활의 안전을 위하여 방범용 CCTV 설치 및 운영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범위 규정(안 제1조 ~ 제3조)

나. CCTV 설치 및 운영(안 제4조)

다. 운영위원회 구성, 기능, 회의 및 수당(안 제5조 ~ 제8조)

라. 비밀유지 규정(안 제9조)

3. 관계법령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4.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5. 기타사항

가. 입법예고 : 2016. 10. 20. ~ 2016. 10. 24.(의견제출 없음)

다. 조례안 : 붙임

서울특별시 마포구 방범용 CCTV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 범죄예방과 주민 생활의 안전을 위하여 방범용 CCTV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범용 CCTV”란 방범을 목적으로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Closed-Circuit Television : CCTV)을 말한다.
2.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 : Closed Circuit Television)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해 외부와 차단된 선로로 전송하는 장치를 말한다.
3. “영상정보”란 특정 목적을 위하여 CCTV로 촬영한 모든 영상을 말한다.
4.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영상정보에 따라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5. “전자심의”란 회의 개최 없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어 송·수신된 자료로 심의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구 관내에 범죄예방과 주민생활의 안전을 위하여 설치되는 방범용 CCTV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설치·운영)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라 범죄예방 및 주민생활 안전을 위하여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 관내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방범용 CCTV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할 경우 서울특별시 마포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과 협의할 수 있다.

다만, 방법용 CCTV 설치장소는 제5조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확정한다.

③ 공개된 장소에 방법용 CCTV를 설치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20명 이상의 연서로 설치·운영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구청장은 제5조 운영위원회에 심의 의뢰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주민의 안녕과 재산을 지키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용 CCTV를 설치·운영함에 있어서 영상정보의 철저한 처리 등으로 지역주민의 개인정보보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정보주체가 CCTV 설치 현황 등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설치목적 및 장소
2. 촬영시간 및 범위
3. 관리책임 및 연락처

⑦ 구청장은 CCTV를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CCTV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된다.

⑧ 구청장은 CCTV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음성정보를 수집하여 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위급상황 발생 시 긴급 조치를 위하여 방법용 CCTV에 별도의 비상통신 수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⑨ 구청장은 CCTV를 통해 수집된 영상정보에 대해 수집 후 최대 30일 이내로 보관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집 후 30일 이상 경과 시 삭제하여야 한다.

1.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영상정보를 수사나 재판 자료로 제공하는 경우
3.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5조(운영위원회 구성 등) ① 방법용 CCTV의 효율적인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방법용 CCTV 설치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마포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2. 마포경찰서 CCTV 업무담당 과장
3. 범죄예방 및 CCTV 관련 정보통신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민간전문가 2명 이상 4명 이내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 위원장은 안전행정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CCTV 전담부서 소관 국장 및 과장은 당연직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고,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CCTV 전담부서 담당팀장으로 한다.

⑥ 위원회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 한다.

1. 방법용 CCTV 설치에 관한 사항
2. 방법용 CCTV 설치장소 선정에 관한 사항
3. 방법용 CCTV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방법용 CCTV 설치·운영 시 지역주민의 협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방법용 CCTV 설치·운영이나 그와 관련하여 방법 및 주민생활 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방범용 CCTV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조정 사안을 전자심의로 심의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회의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직무와 관련된 공무원인 위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비밀유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4조에 따른 CCTV 설치 및 관리 업무
2. 제5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업무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자치법규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자치법규(훈령포함)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나 하부조직의 직제명칭 또는 그 소관 사무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서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문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